

예 산 총 칙

2025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812,684,772	24,380,543
일반회계		713,140,000	21,394,200
특별회계		99,544,772	2,986,343
	공기업특별회계	11,989,981	359,699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11,989,981	359,699
	기타특별회계	87,554,791	2,626,644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1,007,103	30,213
	주차장특별회계	773,226	23,197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2,777,962	83,339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4,198,205	725,946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824,413	24,732
	치수사업특별회계	729,219	21,877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810,406	24,312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53,262,000	1,597,860
	도시개발특별회계	3,004,446	90,133
	비행장소음대책지원 특별회계	167,811	5,034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1,991,263천원으로 한다.
일반회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3,060,658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40,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